



재난 보도 영상 화면의 피해자 묘사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뉴스 가치 평가

오령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윤호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News Users' Evaluation of News Values for Victim Depictions in Disaster Coverage*

Ryeong Oh**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ulture, Korea University)

Ho Young Yoon***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s the sensationalism of victimization visuals in disaster coverage from the perspective of news users. It examines how news users assess the news value of victim depictions in disaster coverage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se evaluations from the two viewpoints: 'the right to know' and 'the need to anonymize victims' privacy.'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urvey in which participants were shown images of victims from actual news coverage of the 2022 Itaewon tragedy. The news values were evaluated using several criteria, including the scene scale, shockingness, social importance, negativity, congruence, timeliness, proximity, personalization, and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st news value is the scale, followed by shockingness, and social importance regarding the depiction of victims. Negativity and timeliness had relatively lowest values in the disaster victim visual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values of 'the right to know' and 'victim privacy anonymity' were in conflict. The need for the right to know and the need for privacy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visuals involving dead bodies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when the bodies were visible. However, the need for privacy was more dominant in scenes showing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ccident, such as ambulances gathering outside the accident site and memorializing victims. This suggests that while the public's right to know is considered important, there is a heightened sensitivity to privacy in more intimate and reflective moments of disast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as part of the 2023 Broadcasting Research Support Project (본 연구는 2023년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vxxohr@gmail.com, first author

*** hoyoungyoon@ewha.ac.kr, hoyoungemail@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coverage.

When examining the impact of news values on the right to know and the need for privacy, the study found distinct relationships. Social importance and on-scene consona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ndicating viewers perceive these aspects as critical for their understanding of the event. Conversely, individuality and shockingnes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need for privacy, suggesting that more personal and graphic depictions raise greater concerns about victim anonymity and protection. This disparity highlights a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certain elements are prioritized in the depiction of disaster scen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verifies the news values evaluated by users regarding direct depictions of death scenes in disaster reporting.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w various news values were evaluated by the public,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ongoing discourse on responsible journalism and the sensationalism of news images. It highlights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informing the public and respecting the privacy of victims, offering insights that could guide future disaster reporting practices to be both informative and respectful.

In conclusio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news users' perspectives when evaluating the sensationalism of images in disaster coverag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the need for privacy protection reflects broader ethical dilemmas faced by journalists. This study provides a valuabl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se complexiti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thoughtful and sensitive reporting in the face of tragedies.

Keywords: Disaster Coverage, News Value, Visual Image, News Users, Right to Know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 보도 화면의 피해자 묘사 장면의 적절성을 뉴스 이용자를 통해 평가하는 연구이다. 9가지 뉴스 가치 차원에서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사용자들의 평가와 경중 판단을 조사하고, 이러한 뉴스 가치 평가가 뉴스 이용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 프라이버시 익명 처리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보도 시 실제 방송된 뉴스 영상 화면의 피해자 이미지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견해 판단을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뉴스 가치를 장면의 규모성, 충격성, 사회적 중요성, 부정성, 일치성, 시간성, 장소성, 개인성, 지위성으로 살펴본 결과 재난 피해자 묘사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규모성, 충격성, 사회적 중요성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의 시간성과 부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뉴스 가치를 가졌다. 뉴스 이용자들이 평가한 알 권리 가치와 피해자 보호 프라이버시 익명처리 필요 가치는 실제 시신이 보이는 사고 순간부터 시신이 구급차로 이동하는 화면까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이들 두 가치는 상호 갈등하는 가치였는데, 사고 직전이나 사고장소 바깥의 구급차 집결, 피해자 추모 등의 화면에서는 알 권리의 필요성이 더 우세했다. 뉴스 가치가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알 권리에서는 사회적 중요성, 현장 대표성의 일치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진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개인성과 충격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본 연구는 재난 보도에서 직접적인 죽음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를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재난 보도, 뉴스 가치, 영상 화면, 뉴스 이용자, 알 권리

1. 문제제기

2022년 12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상파 3사의 이태원 참사 뉴스 특별 영상이 가진 선정성과 관련해 방송사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해당 심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특정한 흐름 처리 내부 기준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 각 방송사 모두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이 있으나 흐름 처리 강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다만 개별 상황마다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부가 서술하였다.

비단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재난 보도에서 재난 피해 발생 순간을 영상으로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하지만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재난 발생 후 취재가 시작되므로 기자가 피해 발생 순간을 직접 취재로 확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소셜 미디어 등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이 더 주목받는다(Simon, Goldberg, & Adini, 2015). 따라서 기자들은 재난 현장 주변에 설치된 녹화 장치나 제보자를 파악해 현장 영상을 수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는 기존 재난과 달리 인명 피해 발생 과정이 다수의 목격자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대비된다. 세월호의 경우는 사고가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방송사 중계에 의존했으며 실제 피해자의 모습을 담기 어려운 선박의 침수였다. 반면 이태원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카메라에 현상이 직접적으로 담겼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이 직접 취재한 영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장 영상을 제보자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해줄 수 있는 목격 영상을 구하기 쉬워질수록 이를 뉴스에 내보내야만 하는 방송 뉴스 기자 및 제작자는 영상 내용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알 권리, 피해자와 유족 보호, 시청자의 안정 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영상 활용 시 일관된 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그러한 결과, 앞서 심의위원회 진술대로 상황마다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무엇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재난 영상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자 차원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관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 뉴스 시청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자 묘사 범위, 그리고 알 권리와 사생활 및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관과 기자 입장에서의 기준은 실제 시청자들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들이 재난 영상의 뉴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

는지 고려함으로써, 뉴스 생산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수용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뉴스 생산자가 뉴스 선택과 보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 마련을 위해서이다. 현재 재난 보도의 기준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은 특정한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뉴스 가치 판단과 선정성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판단은 부재한 상태이다. 실제로 재난보도준칙은 기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공포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가족의 감정,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자극적인 장면의 반복 보도 등에 대한 지양 등을 서술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 2014).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 ‘선정적’, ‘부적절’ 등의 개념은 알 권리와 같은 보도 가치에 대비되어 서술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재난 상황별로 발생하는 특정한 보도 화면 및 표현 자체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뉴스 가치 간 충돌이 발생할 때 특정 가치를 선택하기 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준칙의 내용이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심의 기관에 가서야 선정적인지, 자극적인지 그래서 부적절한 보도였는지를 뉴스 가치와 비교하여 살펴보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수용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뉴스 가치에 대해 보다 선명한 비교의 측면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뉴스 생산자가 가지는 어려움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 가치에 의해 이러한 점들이 상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규범 확립과 생산자 교육 필요성을 주로 제시하고 있으나(백선기·이옥기, 2013; 유승관·강경수, 2011; Ewart & Mclean, 2019) 뉴스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뉴스 생산자의 윤리적 규범이나 관행에 보도 기준에 따라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재난보도준칙에 피해자 및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자극이 서술되어 있더라도 기자의 뉴스 가치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의를 제기하는 주체인 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보니 심의 현장에서는 시청자가 아니라 심의 위원들의 기준이 규제 기준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반응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내용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 연구를 넘어 이용자가 인식하는 재난 보도 이미지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재난 상황에서 정보전달에 유익한 뉴스 생산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영상 중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해 이용자가 뉴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해당 장면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묘사 화면과 관련된 장면들에 대해 본 연구가 설정한 뉴스 가치 기준이 어떠한 순위로 적용되는지를 밝히고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보도 뉴스 장면에 관해 보도를 할 때 앞으로 뉴스 생산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수용자들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문제

1) 재난 보도 영상의 피해자 이미지에 관한 논의

재난 보도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건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Thorson, 2012).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뉴스 조직과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재난 상황의 뉴스는 사회 구성원 및 관계 정부 당국자들에게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개인 및 기관의 행동과 대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Houston, Schraedley, Worley, Reed, & Saidi, 2019). 또한 재난 보도에는 사건에 대한 파악,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보도, 현장 기자 파견, 배경 정보 제공, 정보 검증, 소문이나 오보 정정, 추가 자료 수집 노력 등 저널리즘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도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Scanlon, 2006, 2007). 대부분의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획득한다는 점에서(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 Pantti, Wahl-Jorgensen, & Cottle, 2012), 기존 연구들은 저널리스트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태도로 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Dill & Wu, 2009; Kay, Reilly, Connolly, & Cohen, 2010; Salwen, 1995; Steffens, 2012). 재난 상황은 대부분 비극적이고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사회 구성원의 감정을 담은 뉴스는 선정적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고 정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Pantti & Wahl-Jorgensen, 2007).

그러나 재난 뉴스 영상에서 피해자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은 선정주의에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재난 보도 영상은 특정 집단을 피해자로 단순화하거나 재난의 극적인 장면이 추상적인 가치를 위해 소비되는 등(McCosker, 2013; Thomson, 2021) 재난을 겪는 사회 구성원과 무관한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지적된 바 있다. 선정주의는 미디

어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감각과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Pantti & Wahl-Jorgensen, 2007) 희생자의 모습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고(Chouliaraki, 2006) 공감과 행동을 호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Boltanski, 1999). 특히 피해자 묘사 장면은 재난과 관련된 주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극적 장면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피해자 묘사 장면은 최근 다양한 영상 소스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시민이 촬영한 영상,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피해 발생 과정을 포착한 영상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중계하는 극적 장면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러한 소스에 대한 뉴스 가치 차원의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들은 다소의 선정성을 감수하고 더 높은 리얼리티의 확보를 통한 생생함, 현장성이 있는 영상이 높은 뉴스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다(이창훈, 2012). 현실에 대한 사실성을 확보하는 목격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진정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뉴스가 가진 사실성을 확보함으로써 뉴스의 신뢰를 더해 줄 수 있다고 본다(김수정, 2003; Gynmild, 2014; Tuchman, 1978). 저널리스트들은 피해자 발생 과정이 담긴 영상을 사실적인 시각적 증거로 활용하여 사고 발생 순간의 이미지를 통해 재현의 아우라(Tuchman, 1978)를 높이고, 저널리스트가 강조하고자 하는 목격자의 권위와 현장성을 강화해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Zelizer, 2010).

하지만 저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리얼리티 확보를 통한 알 권리가 수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스트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어 왔다(McQuail, 2013). 실제로 저널리스트들은 알 권리에 관한 보도 기준을 잘못 인식해 공익을 위한 정보보다는 언론인이 흥미롭다고 판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Fisher, 2017),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가 언론의 공표 권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Gauthier, 1999). 또한 알 권리가 언론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Montague, 1997)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가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공적 담론의 내용과 질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Gauthier, 1999).

또한 피해자 발생 과정이 담긴 영상을 비롯해 모든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여겨지기도 한다(Zelizer, 2010). 이미지는 비언어이므로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이 높으며, 뉴스에서 이용된 이미지 역시 암시적인 것이고,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이 반드시 이성적인 정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CCTV 등의 영상 역시 뉴스에서 시각적 증거로 이용될 뿐 해당 이미지가 사실적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Gynmild, 2014). 저널리즘에서는 여전히 언어적 사실성이 우선된다는 점에서(Tuchman, 1978) 이미지의 사실성을 근거로 피해자 묘사 장면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뉴스의 선정성만을 높일 뿐 보도되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논의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뉴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권리는 뉴스 생산자가 주로 판단해왔으며, 재난 보도 수용자는 정보에 입각한 시민 또는 재난 구경꾼 사이에 놓여있다고 지적되어 왔다(Hughes, Palen, Sutton, Liu, & Vieweg, 2008). 뉴스거리가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 가치에 대한 논의 역시 주로 언론인의 뉴스관을 알기 위한 개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용자의 뉴스관은 뉴스 가치보다는 뉴스 관심사(news interest) 개념으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 2008). 하지만 시청자의 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관해 심의 기준과 수용자의 인식의 일치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선정성 기준이 프로그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김경희·심미선·박은희, 2012). 뉴스 선정성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2000년대 이후 미국 9.11 테러의 영향을 받아 뉴스 시청자가 직접적인 죽음 장면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Zelizer, 2010), 사회 구성원이 인정하는 관습과 기준으로 뉴스 가치가 평가될 때 알 권리 또한 인정된다는 논의가 뉴스 제작에 반영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Carrol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 뉴스 보도와 같이 실제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국내외 재난 보도에서의 화면 선정성 차이나 뉴스 가치 판단이 다름으로 인해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보도준칙에서도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뉴스 가치 평가를 관련 차원에서 진행해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재난보도의 뉴스 가치 판단

뉴스 가치는 뉴스 제작자가 특정한 뉴스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원칙으로, 뉴스가 담론을 만들고 의제를 선택하여 뉴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이창현·손승혜, 1999; 정수영·남상현, 2012; Gitlin, 1980; Van Gorp, 2007). 뉴스 가치는 크게 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 고려되는 사항과 뉴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자체의 사항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Caple & Bednarek, 2016).

뉴스 제작자 입장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특정한 뉴스가 뉴스 이용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수용자 입장, 사건이 알려진 정도나 얼마나 실제에 다가설수 있는지, 저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접근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접근가능성, 그리고 뉴스에 적합한 주제인

지를 고려하는 적합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정수영·남상현, 2012; Golding, 1981).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성을 제외하고 수용자의 입장과 적합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뉴스 가치를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단발적 보도로 다루는 방식의 주제적 가치가 아닌 저널리즘 활동 전반에 작용하는 지속적인 가치로 보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라고하는 보다 상위 수준의 추상적 방향성으로 이해된다(김경희·정사강, 2023).

주제적 가치 수준의 논의를 망라하여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이종혁·길우영·강성민·최윤정, 2013), 내용의 명확성이나 약자대변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제외하면 뉴스 가치는 이탈성¹⁾, 사회적 중요성, 갈등성, 인간적 흥미, 선정성, 부정성, 저명성, 조화성, 시의성, 근접성, 활동성, 전문성, 공표성, 확산성 등의 14개의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이들 개념을 활용하여 인터뷰와 기사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1차 요인으로 영향성, 저명성, 심층성, 갈등성, 참신성, 활동성, 유용성, 근접성, 오락성, 이야기 등 10개의 요인으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상위 차원의 추상 개념으로 사회적 중요도, 새로운 볼거리, 수용자 관련성, 인간적 흥미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다(이종혁 외, 2013).

재난보도에서도 뉴스 가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는데, 재난은 주로 일상성에서 이탈하여 나타나고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일상 이탈성, 사회적 중요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었다(Yan & Bissell, 2018). 재난의 경우 이탈의 강도와 심각성이 지배적인 요인으로 이탈은 참신성, 기이함, 특이성, 갈등, 논란, 선정성 등으로 측정되었다(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 사회적 중요성은 사회 집단에 중요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Shoemaker et al., 1991) 재난에서 사회적 중요도는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로 측정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예: Adams, 1986). 다만 이들 연구들은 뉴스 가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주로 문자화된 기사 위주 평가에 그치며 이미지에 관한 뉴스 가치 평가는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케이플과 베드나렉(Caple & Bednarek, 2016)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지의 뉴스 가치에 대한 시각적 담론을 포함하는 뉴스 가치를 제시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뉴스 가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뉴스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벤트와 같은 현실이 가지는 잠재적 뉴스 가치 두 가지를 연결짓는 방법으로 뉴스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뉴스 가치가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담론 중심 방법을 제시하면서, 뉴스 이미지가 제시하는 기호학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1) 국내 문헌에서는 영문 Deviance를 이탈성으로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는데, 일상성에서 벗어난 의미의 '이탈'이 윤리적인 규범의 의미를 가지는 '일탈'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이후 '이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로 한다.

방식에 집중했다. 반면 케이플과 베드나렉의 논의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제시한 뉴스 가치에 개별 항목이 가지는 이미지의 속성과 카메라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부정성이나 관련 규모성의 경우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화면이 흐림 처리가 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불안정한 상황을 통해 위험을 보여주거나 사건의 영향력과 관련하여서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식이다.

이들이 제시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Table 1>이다. 각 항목들은 뉴스 가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반영하면서도 관련 규모성, 전형성, 미학적 소구력 등으로 이미지만의 특징을 살리고자 하는 측면이 담겨 있다. 해당 표에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 범주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News Value through Image Content

개념**	뉴스 가치 항목	내용	카메라 기법
참신성	시의성 (Timeliness)	이미지에 표현된 시간의 관련성, 예를 들어, 계절을 나타내는 환경이나 식물, 문화적 상징물, 시즌에 맞는 사건들을 보여줌	흐릿하고 움직이는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상황을 암시
	신선함 (Novelty)	사람들이 놀라거나 충격을 받는 모습, 사회적 기준이나 예상을 벗어나는 이색적인 사건 등을 포함	큰 대비를 만드는 프레임 내의 요소들의 대조
중요성	근접성 (Proximity)	잘 알려진 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자연 특성, 문화적 상징물을 보여주는 것	장소/문화적 연결성을 나타내는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
	관련 규모성 (Superlativeness)	이미지 프레임 내에서 핵심 요소들의 반복, 극단적인 감정 표현, 참가자들의 배치 등을 통해 사건의 규모나 범위를 보여줌	특정 렌즈(와이드 대 텔레포토) 사용과 각도를 통해 심각함/고도의 위험을 암시
	영향력 (Impact)	사건의 여파(중종 부정적인)를 보여주고, 사건에 의해 일어난 감정이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전달하는 이미지 시퀀스 등을 포함	
	엘리트성 (Eliteness)	정치 지도자, 유명인사 등 인식 가능한 고위 인물을 보여주고, 군사나 경찰 혹은 경호원에 둘러싸인 모습, 엘리트 직업과 관련된 맥락 등을 포함	참가자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낮은 카메라 각도 사용
전형성	일치성 (Consonance)	스테레오타입 이미지와 일치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예: 옥토버페스트의 맥주와 유방)	
	부정성 (Negativity)	부정적인 사건들과 그 효과를 보여줌, 예를 들어, 사고의 여파, 자연재해, 부상자/사망자, 파괴된 장면/손상된 것들을 포함	높은 카메라 각도를 사용하여 시청자를 지배적인 위치에 두는 것
경험성	개인화 (Personalisation)	일반적인 개인을 보여주고, 큰 그룹 속에서 돋보이는 개인,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 등을 포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균등한 위치에 개인을 배치하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 클로즈업 샷 사용
	심미적 소구 (Aesthetic Appeal)	아름다움이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장소, 물체, 풍경을 보여주는 것	다이나믹하고 비대칭적인 구성을 사용하고, 대각선 축, 불균등한 컬러 대비를 활용하여 미적 매력 강조

* 자료 원천: 케이플과 베드나렉(Caple & Bednarek, 2016)의 Table 2

** 본 논문 저자 추가

〈Table 1〉이 이미지를 고려한 뉴스 가치를 논의하는데 기준을 제공해주고는 있으나, 이를 그대로 재난 관련 보도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소구'와 같은 항목은 재난 보도 화면 이미지에서 뉴스 가치로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정성 항목과 영향력 항목은 특정한 이벤트,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여파에 관한 것이고 부정성은 해당 사건이 일어남으로 나타난 물리적 파괴에 대한 이미지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이미지상에서는 동일한 이미지가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근접성도 지리적 근접성 뿐만 아니라 인지적 근접성을 포함하는 등 복합적인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뉴스 가치가 높아서 뉴스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알 권리(right to know)를 위해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알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적용된다. 재난보도준칙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어 있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종종 알 권리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보다 더 우선시되곤 한다. 재난 보도에는 정부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익적 가치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이근옥, 2020; Sanfilippo, Shvartzshnaider, Reyes, Nissenbaum, & Egelman, 2020). 따라서 실제 뉴스 자체가 가지는 가치와 더불어서 최종 보도 전에 판단하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매개점이 뉴스 가치 판단에 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문제

지금까지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우선, 뉴스 이용자가 평가하는 뉴스 가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에 착목하여, 뉴스 가치와 관련된 항목에서 피해자 묘사 장면에서 어떠한 점들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뉴스 이용자들의 재난 보도 영상의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 평가는 어떠한가?

다음으로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관해 뉴스 가치 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 재난 보도 영상의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 판단이 알 권리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에서 나타난 사건 현장 보도의 대표적인 6개의 사례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재난 관련 이미지 활용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자료

(1) 뉴스 화면 추출

재난 뉴스 보도 화면의 뉴스 가치에 대한 뉴스 이용자들의 판단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재난 영상 보도를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 참사 사고 자료 화면으로 연구 자료를 구성했다.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지상파의 메인 뉴스가 특집으로 방영된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상파 3개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3개사(TV 조선, JTBC, 채널 A)에서 보도된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영상을 수집하였다. 인명 피해를 묘사하는 대표 장면을 선별하기 위해 먼저 죽음을 묘사하는 이미지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구분을 참고하였다(Zelizer,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뉴스에서는 단순화되어 시각화되는데, 보통 뉴스에서는 직접적인 죽음의 순간을 보여주는 이미지 이외에도 죽음 직전의 모습,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것, 죽음이 발생한 장소(건물 등), 죽음을 상징하는 사물 등 암시적인 영상으로 구성된다. 죽음에 대한 분류를 한 다른 연구에서도 죽음의 가시성 수준을 사망자 묘사 방식에 따라 사망자의 전체 노출, 일부 노출, 암시적 장면 등으로 구분하였다(Hanusch,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죽음과 관련된 피해자 묘사 장면을 선별하기 위해 죽음이 발생하기 전(사고 발생 직전), 죽음 발생 순간(사고 발생 당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의 모습(심정지 발생), 죽음 발생 후 수습 과정(구조대 수습), 죽음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물(구급차 및 구조대), 죽음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추모)를 범주로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보도된 3일치의 영상에서 프레임을 추출해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집된 데이터에 죽음 장면에 대한 6개 기준을 적용해 각 범주마다 대표적인 수 있는 등장 빈도가 가장 많은 시각적 화면 위주로 장면을 선별했다. 그리고 이렇게 빈도 기준으로 선정할 때 뉴스 화면을 ConvNeXt기반 딥러닝 이미지 클러스터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화면을 구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구별될 수 있을 법한 장면은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²⁾ 이러한 결과로 선택된 장면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Six Scenes Depicting Disaster Victims

분류	죽음 속성	이미지	제공된 텍스트 설명
장면A (사고 직전)	죽음 직전		이 화면은 사고 발생 이전에 골목길에 사람이 몰리던 장면입니다.
장면B (사고 순간)	죽음 발생		이 화면은 사고 당시 사람들이 서로 밀려서 쓰러진 장면입니다.
장면C (심정지 발생)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		이 화면은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장면D (구조대 이송)	죽음 이후 피해자 수습		이 화면은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대가 싣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2) 본 화면 구분 방법의 적용 관련 사항은 현재 시점상 심사중인 논문으로, 해당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궁금할 경우 본 논문의 교신 저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p>장면D (구급차 집결)</p>	<p>죽음과 간접적 관련 사물</p>		<p>이 화면은 이태원에 구조대가 긴급출동한 장면입니다.</p>
<p>장면F (피해자 추모)</p>	<p>죽음과 간접적 관련 행위</p>		<p>이 화면은 이태원역 앞 추모공간에 현화하는 장면입니다.</p>

6개 장면은 모두 텍스트 설명과 함께 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었다.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추상적 속성을 가지므로 모호하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반면, 텍스트는 이미지가 가진 의미의 모호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Barthes, 1977). 만약 연구의 목적이 재난 보도 이미지에 대한 이용자의 능동적 의미 해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텍스트 설명을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난 보도에서 활용한 피해자 묘사 수준에 따른 각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묘사 수준 별 이미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설명한 텍스트 설명을 추가하였다. 실제로 시청자에게 텍스트 정보 없이 영상만 보여주었을 때 내용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는 연구(Graber, 1987)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아무런 텍스트 없이 이미지만 제공한다면 묘사 내용에 대한 이성적 평가보다는 개인의 감정적 소구에 의존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간략한 텍스트 정보를 함께 구성해 참여자가 임의로 이미지를 해석하거나 느낌에 의존해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장면 A와 장면 B는 골목길의 인파라는 점에서 유사한 장면으로 보이나 본 연구는 텍스트 지시문을 통해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조사 참여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시신 등 죽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방송사에서 흐름 처리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2) 설문 조사

추출된 영상을 포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조사 참여자가 이태원 사고 당시 뉴스 시청 경험에 대한 문항 몇 가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재난 피해자의 죽음 묘사와 관련된 6개의 장면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하나의 장면을 제시받을 때마다 해당 이미지에 대한 뉴스 가치, 알 권리 필요성, 흐름 처리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뉴스 가치 평가 문항 9가지 역시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20-5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면이 가지는 선정성이 설문 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연구윤리위원회(IRB) 심사 과정에서 청소년과 60세 이상은 제외했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이태원 사고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조사 시작 전에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할당표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도 탈락자를 제외하고 끝까지 응답한 339명(남: 172명, 여: 167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 연구 방법

(1) 뉴스 가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이미 보도된 이미지가 어떠한 측면에서 뉴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해당 이용자의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선행연구에 따라(Bell, 1991; Caple & Bednarek, 2013) 뉴스 가치를 '이미지에 포함된 뉴스 이벤트의 가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측정하는 뉴스 가치는 <Table 2>에 제시된 이미지를 포함한 뉴스 가치 범주에 대한 선행연구를 응용하되, 심미적 소구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범주명을 재정의하여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of News Value

항목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부정성	뉴스 이벤트의 부정적인 속성	'이 화면은 이 사고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시간성	뉴스 이벤트의 시간적인 속성	'이 화면은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을 보여준다'
장소성	뉴스 이벤트가 발생한 공간적인 속성	'이 화면은 이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보여준다'
규모성	뉴스 이벤트의 범위적 속성	'이 화면은 이 사고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보여준다'
중요성	뉴스 이벤트의 결과인 사회적 중요도	'이 화면은 이 사고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충격성	뉴스 이벤트의 비일상 이탈적 새로움	'이 화면은 이 사고가 기존과 달리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보여준다'
일치성	뉴스 이벤트를 대표하는 속성	'이 화면은 이 사고의 대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위성	뉴스 이벤트와 관련된 인물의 공적 속성	'이 화면은 화면 속 인물의 역할이나 직업을 보여준다'
개인성	뉴스 이벤트와 관련된 인물의 사적 속성	'이 화면은 화면 속 인물의 개인적 사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당 항목들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알 권리 필요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 측정

알 권리 필요성은 본 연구에서 보도된 이미지에 대한 이용자의 알 권리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해당 뉴스 보도 화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로 설정하였으며 “매우 부적절”, “약간 부적절”, “보통”, “약간 적절”, “매우 적절”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은 익명 처리 필요성으로 측정하였으며 화면에 대한 흐림 처리 기술 적용 필요성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해당 화면은 흐림 처리(일명 모자이크, 블러)가 필요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전혀 불필요”, “약간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 방법

분석은 평균 비교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 방법을 SPSS 25.0으로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뉴스 이용 및 소셜 미디어 사용 변인은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진단과 관련하여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VIF 지수가 1.07에서 2.3사이 수준에 머무르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 결과

1) 장면별 뉴스 가치 인식

〈Table 4〉에 제시된 6개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 평가는 재난 뉴스 보도 가치에 관한 뉴스 이용자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규모성 가치가 구조대 이송 장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격성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대 이송 장면에서는 시간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재난이 구조가 급박한 사건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4. Response Mean of News Value Items

	부정성	시간성	장소성	규모성	중요성	충격성	일치성	지위성	개인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장면A (사고 직전)	3.95 (1.00)	4.01 (.90)	4.19 (.86)	4.47 (.68)	4.22 (.80)	4.27 (.88)	4.24 (.80)	2.32 (1.30)	2.83 (1.34)
장면B (사고 순간)	3.81 (1.06)	3.68 (1.08)	3.75 (1.05)	4.00 (.94)	3.84 (.94)	4.04 (.93)	3.74 (1.04)	2.37 (1.20)	3.30 (1.24)
장면C (심정지 발생)	3.65 (1.11)	3.55 (1.05)	3.64 (1.09)	4.27 (.81)	4.02 (.95)	4.23 (.85)	3.86 (.95)	3.18 (1.21)	3.19 (1.28)
장면D (구조대 이송)	3.45 (1.07)	3.84 (.92)	3.41 (1.10)	3.57 (1.06)	3.77 (.92)	3.80 (.96)	3.31 (1.03)	3.71 (1.05)	2.98 (1.18)
장면E (구급차 집결)	3.42 (1.14)	3.98 (.84)	3.87 (.93)	4.29 (.73)	3.97 (.83)	3.99 (.93)	3.52 (1.00)	3.55 (1.11)	2.45 (1.22)
장면F (피해자 추모)	2.99 (1.14)	2.33 (1.21)	3.24 (1.11)	3.85 (.95)	3.83 (.90)	3.67 (1.06)	3.18 (1.08)	2.43 (1.12)	2.91 (1.13)

또한 위의 결과는 뉴스 이용자들이 재난 피해자 화면 이미지에 있어서 부정성에 대한 가치 평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부정성은 피해자 모습 이미지에서 규모성, 사회적 중요성, 충격성보다 모두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뉴스 이용자들은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나 여파보다 사건 전달과 관련된 사실성, 객관성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중요성이 2순위로 높은 뉴스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피해자 추모 장면으로 해당 장면에서는 부정성에 대한 평가가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이 있는 개인성 항목은 ‘사고 순간 > 심정지 발생 > 구조대 이송’ 장면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 시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개인의 사적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장면들에서 지위성과 개인성 항목의 가치 순위가 다른 가치보다 낮아 뉴스 이용자들은 재난 피해자 묘사 장면 전반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보다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치는 규모성과 충격성에 대한 뉴스 가치 판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성과 객관성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개인성과 지위성은 결국 개인 정보와 연관된 것인데, 사실성과 객관성을 피해자 모습과 관련된 이미지 보도에서 뉴스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실제로 이들 두 개의 가치가 보도의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대립 가치인지는 위의 평균 비교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건 이미지인 사고 직전, 사고 순간, 심정지 발생 3가지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 응답을 각 장면마다의 상관관계로 구한 다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만을 남겨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각각의 뉴스 가치들에 대한 응답 패턴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1>을 보면 사고 직전에는 시간성과 장소성이 하나의 군집으로 쉽게 어울리고, 사건의 중요성과 부정성이 하나의 군집, 그리고 사건의 규모성, 충격성, 일치성이 또 하나의 군집이 되며 마지막으로 개인성과 지위성이 하나의 군집임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사고 순간과 심정지 발생이라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 장면에서 이르면 충격성, 중요성, 규모성, 일치성의 4가지 뉴스 가치가 하나의 군집으로 엮이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개인성과 지위성이 하나의 군집인 것은 여전하며, 부정성이 심정지 발생 장면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과 엮이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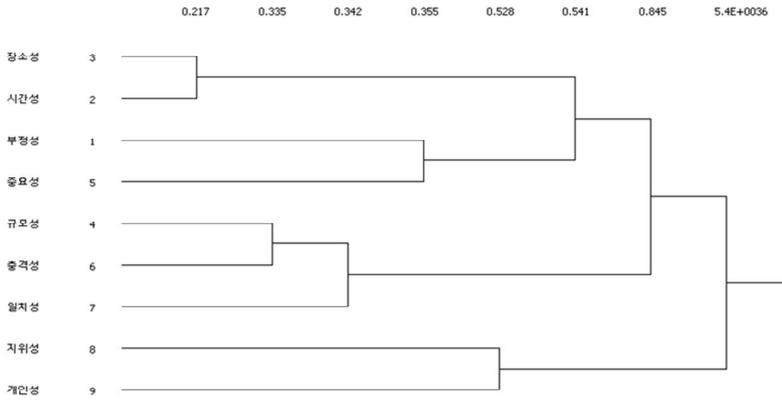
또한, 장면 A 군집분석을 보면 지위성과 개인성이 묶이는 거리는 0.52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치들과 유사성으로 묶이는 다른 가치들이 이 거리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면 B 군집분석에서도 이들은 서로 간에 가장 나중에 묶이는데 이때는 심지어 다른 가치들의 군집이 2차 군집 때보다 3차 군집에 이르러 유사성 군집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유사성이 떨어지는 0.878 거리에 위치한다. 마찬가지로 장면 C에서도 가장 멀리서 연결되는 0.504에서 묶이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규모성, 충격성과 개인성, 지위성이 상호 대립되는 가치임을 잘 보여준다.

즉 실제로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에서 뉴스 이용자들은 해당 재난 사건이 가지는 비일상적 이탈성이 가지는 충격, 재난의 규모, 실제 사건의 실제 보도, 사건의 중요성 등을 중요시하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러한 가치 판단과 대립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뉴스 가치 판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호림처리보다는 사건의 현장성, 객관성, 사실성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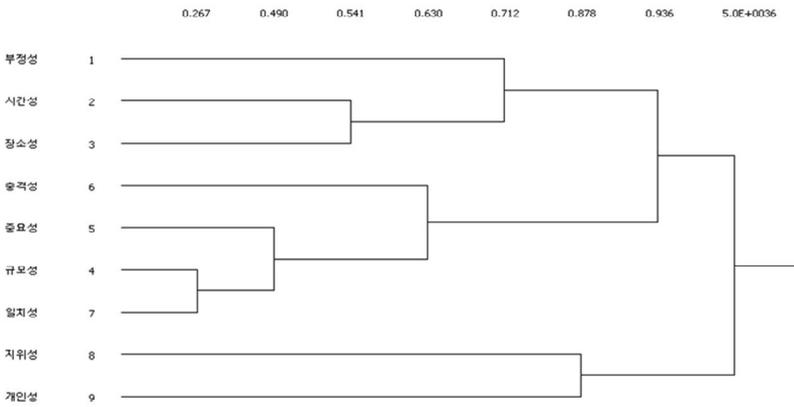
2) 알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과 뉴스 가치

다음으로 이용자가 인식하는 알 권리 필요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Table 5>를 보면, 사고 발생 순간, 심정지 발생, 구조대 이송 등 시신과 관련된 장면의 경우에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 처리 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세 가지 장면의 경우 알 권리가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우선한다기보다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필요성 충돌로 인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높은 장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사고 직전, 구급차 집결, 피해자 추모 등 직접적인 시신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알 권리 필요성이 유의미하게 높아 피해자 익명 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시청자들이 재난 화면에서 시신 등장 장면을 거부하는 경향은

장면A 사고직전



장면B 사고 순간



장면C 심정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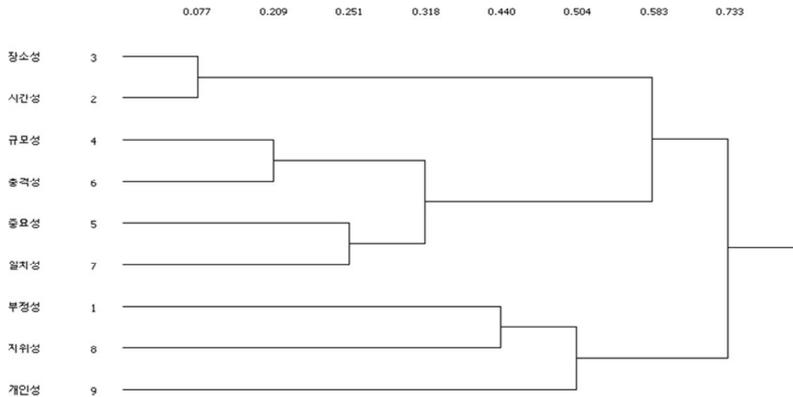


Figure 1. Hierarchical cluster dendrogram of news value items for three scenes (B,C,D)

9.11 테러의 끔찍한 장면 보도 이후 나타났다고 이야기되었는데, 국내 뉴스 이용자들도 시신 등 장 장면에 대한 선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거나 현장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시신이 직접 드러나는 장면을 보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Table 5. Mean Differences in Responses on the Right to Know and the Necessity of Anonymization by Scene (N=339)

	(A) 알 권리	(B) 프라이버시 익명처리	대응 표본 평균차 검증
	M (SD)	M (SD)	(A) - (B) (Sig.)
장면A (사고 직전)	4.01 (.91)	3.03 (1.37)	0.976 $p < .000$
장면B (사고 순간)	3.65 (.99)	3.54 (1.24)	0.109 $p = .258$
장면C (심정지 발생)	3.74 (1.02)	3.88 (1.15)	-0.139 $p = .112$
장면D (구조대 이송)	3.76 (.90)	3.67 (1.14)	0.094 $p = .251$
장면E (구급차 집결)	4.08 (.81)	1.99 (1.21)	2.09 $p < .000$
장면F (피해자 추모)	3.77 (.94)	2.35 (1.34)	1.43 $p < .000$

그렇다면 구체적인 뉴스 가치 판단이 특정한 재난 보도 화면 이미지에 대한 알 권리 판단과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처리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 판단을 독립변수로 두고, 종속 변수로 각각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익명처리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6>과 <Table 7>에서 각각 알 권리 필요성과 프라이버시 익명성 처리 필요성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알 권리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 가치를 보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해당 이미지가 예상과 일치하는 사건을 대표하는 전형성을 가지는가와 관련된 일치성 두 가지 차원이 전반적으로 모든 장면에서 관찰된다. 다만 사고 순간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성이 중요성을 상쇄할 정도로 부적 관계를 보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사고 순간 장면이 실제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고 직전 화면과 사고 이후 구급차 집결 화면에서 규모성이 알 권리 필요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사건 전과 후의 화면 이미지로 충분하며, 사고 순간과 심정지 발생 등 시신 등장 장면의 규모성은 알 권리 필요성과 관련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 추모 장면에서도 규모성이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추모 장소와 국화꽃의 규모 등이 재난의 크기를 보여주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 처리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개인성과 충격성이 일관되게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미지 속 인물을 집단 군중이 아닌 인물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성과 지위성이 같은 군집으로 묶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재난 보도 이미지에서 죽음이라는 사적 장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인물 역할과 관련된 지위성보다는 사적 모습에 대한 개인성 인식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 처리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결과와 본 결과를 이어보면 결과적으로 사고 직전부터 사고 발생까지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뉴스 이용자의 예상과 부합하는 현장의 대표적 일치성이 알 권리의 필요성을 높여주나, 사건의 충격성은 이러한 알 권리를 상쇄시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 처리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을 드러내면서도 직접적인 죽음 장면으로 인한 충격성과 개인성이 포함되지 않는 뉴스 보도 화면 이미지가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제 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인 경우 사고 직전, 사고 순간, 심정지 발생 등의 장면에서 알 권리에 대한 판단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연령 효과는 심정지 발생 장면에서만 유의미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알 권리 필요성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고 직전과 구급차 집결 등의 장면에 대한 알 권리 필요성을 높게 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소셜 미디어 이용량인데 심정지 발생이라는 자극적 장면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알 권리 필요성이 높았다.

Table 6. The Impact of News Values on the Perceived Necessity of the Right to Know by Scene (N=339, Standardized)

		장면A (사고 직전)	장면B (사고 순간)	장면C (심정지 발생)	장면D (구조대 이송)	장면E (구급차 집결)	장면F (피해자 추모)
통제변수	여성	-0.128 *	-0.149 **	-0.178 ***	-0.064	-0.044	-0.048
	연령대	0.049	0.067	0.208 ***	0.061	0.037	0.041
	교육수준	0.115 *	-0.076	-0.050	0.014	0.100 *	0.085
	세대소득수준	0.004	-0.015	-0.028	0.019	0.066	0.060
	뉴스 이용량	0.038	0.014	0.001	0.024	0.027	-0.019
	소셜 미디어 이용량	0.089	0.076	0.127 *	0.037	0.047	0.047
뉴스가치	부정성	-0.085	-0.086	-0.103	-0.113	-0.074	-0.105 *
	시간성	0.102	0.109	0.126	-0.054	0.214 ***	-0.091
	장소성	-0.083	-0.054	-0.219 **	0.072	-0.074	0.031
	규모성	0.147 *	-0.049	0.091	0.059	0.197 **	0.184 **
	중요성	0.268 ***	0.155 *	0.080	0.161 *	0.149 **	0.243 ***
	충격성	-0.127	0.106	0.041	-0.026	0.091	0.090
	일치성	0.162 **	0.213 **	0.265 ***	0.148	0.130 *	0.137 *
	지위성	0.102	0.013	0.059	0.184 **	0.026	0.022
개인성	-0.113	-0.158 **	0.050	-0.068	-0.117 *	0.005	
F	5.590 ***	4.61 ***	7.206 ***	4.155 ***	10.341 ***	8.799 ***	
Adj R2	0.169	0.138	0.216	0.123	0.293	0.257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남성기준

Table 7. The Impact of News Values on the Perceived Necessity of Privacy and Anonymity Handling by Scene (N=339, Standardized)

		장면A (사고 직전)	장면B (사고 순간)	장면C (심정지 발생)	장면D (구조대 이송)	장면E (구급차 집결)	장면F (피해자 추모)
통제변수	여성	0.138 **	0.115 *	0.142 **	0.169 **	0.130 **	0.044
	연령대	0.001	0.005	-0.041	-0.064	0.022	-0.066
	교육수준	0.001	0.036	0.047	0.065	-0.034	-0.008
	세대소득수준	-0.005	-0.013	0.030	0.060	-0.013	0.002
	뉴스 이용량	-0.053	-0.085	-0.071	-0.132 *	0.009	-0.098
	소셜 미디어 이용량	0.023	-0.018	0.066	0.027	-0.067	-0.053
뉴스가치	부정성	0.116 *	0.179 **	0.132 *	0.129	0.114 *	0.168 **
	시간성	-0.082	0.025	-0.084	0.055	-0.086	0.111
	장소성	0.087	0.058	0.026	0.026	0.072	-0.022
	규모성	0.108	0.061	0.128	-0.049	-0.162 **	-0.003
	중요성	-0.105	-0.049	-0.041	0.020	0.051	-0.036
	충격성	0.146 *	0.183 *	0.198 **	0.171 *	-0.024	0.070
	일치성	-0.093	-0.008	0.013	0.009	0.043	0.130 *
	지위성	0.101	0.069	-0.098	0.111 *	-0.043	0.078
개인성	0.370 *	0.258 ***	0.296 ***	0.101	0.480 ***	0.180 **	
F	9.301 ***	10.781 ***	9.855 ***	6.019 ***	11.218	6.837	
Adj R2	0.269	0.303	0.282	0.182	0.312	0.206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남성기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 처리 필요성과 관련한 통제 변수의 영향은 여성의 경우 사고 직전, 사고 순간, 심정지 발생, 구조대 이송, 구급차 집결 등 사건 현장 전반에 걸쳐 프라이버시 익명성 처리 필요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는 영향이 없었는데 뉴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구조대 이송과 관련된 사항에서 프라이버시 익명성 처리 필요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재난 보도 영상에서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가치 판단에 대해 알아보고 뉴스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미지 내용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태원 참사 보도 화면을 대상으로 피해자 묘사 관련 장면들에 대한 이용자의 뉴스 가치 인식에 대해 살펴본 후, 뉴스 가치 인식이 영상 내용에 대한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처리 필요성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피해자가 관련된 장면과 관련 뉴스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규모성, 충격성, 사회적 중요성이었고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치는 시간성과 장소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가치의 비일상적인 이탈성과 사회적 중요성이 핵심 뉴스 가치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뉴스 이용자의 판단 역시 기존의 뉴스 제작자 및 저널리스트들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Shoemaker, 1996; Shoemaker & Cohen, 2012; Shoemaker et al., 1991). 이 결과는 재난 보도 영상에서도 비일상적 이탈성과 사회적 중요성이 저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뉴스 이용자에게 주요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시간성 및 장소성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뉴스 생산자가 재난 보도에 이용할 영상을 선별할 때 시간성과 장소성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뉴스 생산자는 이번 이태원 사고 보도 영상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을 활용할 수 있었다. SNS와 CCTV, 블랙박스 등 방송사가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직접 찍지 못한 영상들을 얻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 이용자들은 피해자 묘사 관련 장면 전반에서 재난에 대한 시간과 장소 등 기본 정보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뉴스 생산자들이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영상에서 풀샷은 영상이 촬영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건사고에서 기자들은 피해 발생 이후 도착해 사고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기자들은 피해 장소와 원인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현장을 폴샷-미디엄샷-클로즈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훈련받는다. 따라서 방송사는 자사의 전문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서 장소성과 시간성을 반영하는 장면을 병용한다면 재난 현장 영상에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취재 환경 특성상 재난 발생 직후 시작된 긴급 특보 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고가 발생하고 20시간이 경과한 후 보도 아이템이 정리된 정규 뉴스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뉴스 생산자들이 피해자 묘사 장면을 선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향후 재난 보도 영상에서는 시간성과 장소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뉴스 이용자는 재난 피해자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장면보다는 사고 수습 및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장면에서 알 권리를 더 높게 인식했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은 낮게 인식했다. 특히 사고 순간, 심정지 발생, 구조대 이송 장면 등 피해자 시신이 포함된 장면에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시청자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현상성뿐만 아니라 선정성도 동시에 인식하므로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재난 보도에서 재난 피해자의 사망이 포함된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 시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최근 SNS에 재난이나 사건사고 현장이 그대로 촬영된 영상을 뉴스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마추어 생산자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치는 것과는 달리, 주요 언론사는 표현에 대한 책임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이미지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이미지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윤리 및 직업 규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에는 뉴스 조직의 권위와 신뢰가 걸려있다(Pantti & Andén-Papadopoulos, 2011). 따라서 재난 보도에서 역시 피해자의 직접적인 죽음 장면이 이미 SNS나 외신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방송 뉴스에 재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방송사의 윤리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이용이 요구된다. 실제로 유럽의 공영 방송 채널들은 시위 피해자 사망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할 때 제한적인 전달 방식을 채택하였다(Pantti & Andén-Papadopoulos, 2011). 스웨덴의 SVT1은 하루의 시간을 두고 영상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아마추어가 촬영한 영상임을 고지하여 방송했고, 핀란드의 YLE TV1은 해당 영상이 유튜브나 SNS 창에서 재생되는 모습으로 영상 시작 부분의 몇 초 가량만 이용해 해당 영상의 존재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국의 BBC는 해당 영상의 처음과 끝의 일부만 짧게 이용하거나 스틸 이미지로 제시해 실제 사망 장면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방송사의 선택이 사실성과 현장성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저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않는다. 선행연구(Zelizer, 2010)는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죽음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수용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과거 뉴스 생산자가 선택한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시신과 같은 직접적인 죽음 장면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화면은 배제하되, 사건 현장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해당 재난의 본질적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중심으로 뉴스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시청자들이 사망한 피해자가 드러나 있는 장면보다는, 사고 원인과 구급차 집결 등 사고 전후 원인과 처리 장면에 대한 알 권리를 더 높게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유형의 장면으로도 재난 보도의 현장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 죽음의 직접적인 묘사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가 항상 높지 않은 결과를 통해, 해당 장면을 흐림 처리에 의존해 굳이 방송하기보다는 보여주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제 피해가 나타나는 소셜 미디어의 화면을 흐림 처리해서 전달하는 대신, 사건 전후의 모습은 보여주되 사망의 실제 장면은 배제하고 설명을 위한 그래픽을 사용하는 등 표현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직접적인 죽음의 포착이 가치있는 보도였던 과거와 달리 죽음이 진행되는 다양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이상 저널리즘의 기본 가정이 아니라는 지적은 뉴스 생산자들이 향후 재난 보도 영상 생산에서 유심히 고민해야 하는 점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당시 방송사들은 특히 2일차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상자 노출, 심폐소생술 등의 영상을 배제하고 현장 영상을 엄격하게 선별해 정지화면과 흐림 처리를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은 아직 방송사마다 내부 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까다로워진 시청자 인식을 반영하려면 해당 논의를 모든 방송사에 범용 가능한 준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준칙 마련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의의가 있다.

셋째, 재난 보도 영상의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익명처리 필요성 인식은 서로 다른 뉴스 가치의 영향을 받았다. 먼저 알 권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성·사회적 중요성·규모성·시간성이 정적인 영향, 개인성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익명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성·개인성·충격성이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든 피해자 묘사 장면에서 일치성이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뉴스 생산자가 특정 이미지를 재난 보도의 상징으로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일치성은 이미지의 상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미지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함께 가지는 하나의 시각적 기호이다. 즉, 6개 장면에 담긴 시각 정보는 인파, 쓰러진 사람, 골목길, 구조대, 구급차, 국화꽃 등이지만 시청자가 한 장면을 보고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된다면 이 이미지는 해당 사고에 대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상징적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며 미디어에서

재생산되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뉴스 이미지 역시 집단 기억의 매개체이자 사회적으로 공유된 개념이나 신념을 상징할 수 있다(Zelizer, 2010). 따라서 재난 보도의 특정 장면에 대한 일치성이 높은 경우 시청자는 해당 장면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보 및 집단 기억의 대상이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정보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특정한 이미지의 반복 보도가 재난 보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재난 인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재난 보도 영상에서 이용되는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알아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조사에서 동영상 대신 스틸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방송사의 재난 보도 영상의 역할에 대한 조사이므로 영상을 이용했다면 보다 정밀한 조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송 뉴스는 이미지 한 장에 해당하는 한 컷이 3-4초로 짧게 제시되므로 관련된 연구를 동영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해당 사고는 다른 재난보다도 이탈성이 강한 속성을 많이 갖춘 사고였기 때문에 자연 재난 또는 여타 사회적 재난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는 뉴스 영상을 대상으로 이미지의 뉴스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다른 재난과의 비교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dams, W. C. (1986). Whose lives count? TV coverage of natural disas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36(2), 113-122.
- Back, S.-G., & Lee, O.-K. (2013). A comparative study of media coverage on natural disasters among Korea, Japan and U.S.: Focused on coverages on Japanese earthquake and Tsunami among KBS TV, NHK TV and CNN TV.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1), 272-304. [백선기·이옥기 (2013).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 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KBS, NHK, CNN의 일본 대지진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1호, 272-304.]
- Barthes, R. (1977). *Image-music-text*. New York, NY: Hill and Wang.
- Bell, A.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UK: Blackwell.
- Boltanski, L. (1999). *Distant suffering: Morality, media and politics* (G. Burchell, Tra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Caple, H., & Bednarek, M. (2013) *Delving into the discourse: Approaches to news values in journalism studies and beyond*.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Caple, H., & Bednarek, M. (2016). Rethinking news values: What a discursive approach can tell us about the construction of news discourse and news photography. *Journalism*, 17(4), 435-455.
- Carroll, E. C. (2017). Making news: balancing newsworthiness and privacy in the age of algorithms. *Georgetown Law Journal*, 106(1), 69-114.
- Chouliaraki, L. (2006). The aestheticization of suffering on television. *Visual Communication*, 5(3), 261-285.
- Dill, R. K., & Wu, H. D. (2009). Coverage of Katrina in local, regional, national newspap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0(1), 6-20.
- Ewart, J., & McLean, H. (2019). Best practice approaches for reporting disasters. *Journalism*, 20(12), 1573-1592.
- Fisher, C. (2017). Re-assess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The shift from journalism to political PR. *Journalism Studies*, 18(3), 358-375.
- Gauthier, C. C. (1999). Right to know, press freedom, public discours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4(4), 197-212.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ding, P. (1981). The missing dimensions - News media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hange. In E. Katz & T. Szecskö (Eds.), *Mass media and social change* (pp. 63-81). London, UK: Sage.
- Graber, D. A. (1987). Television news without pictur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1), 74-78.
- Gynnild, A. (2014). Surveillance videos and visual transparency in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15(4), 449-463.
- Hanusch, F. (2012). The visibility of disaster deaths in news images: A comparison of newspapers from 15 countri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4(7), 655-672.
- Houston, J. B., Pfefferbaum, B., & Rosenholtz, C. E. (2012). Disaster news: Framing and frame changing in coverage of major US natural disasters, 2000-2010.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9(4), 606-623.
- Houston, J. B., Schraedley, M. K., Worley, M. E., Reed, K., & Saidi, J. (2019). Disaster journalism: Fostering citizen and community disaster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across the disaster cycle. *Disasters*, 43(3), 591-611.
- Hughes, A. L., Palen, L., Sutton, J., Liu, S. B., & Vieweg, S. (2008, May). *Site-seeing in disaster: An examination of on-line social convergence*.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ISCRAM Conference, Washington, DC.
- Im, Y.-H., Kim, E.-M., Kim, K., & Kim, Y. (2008). News perceptions and uses among online-news us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4), 179-204. [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 (2008).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이용.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79-204.]
-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2014). *Guidelines for disaster reporting*. Retrieved 5/20/24 from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한국기자협회 (2014). 재난보도준칙.]
- Jung, S.-Y., & Nam, S.-H. (2012). The study on non-reporting and exclusive coverage of general news program of terrestrial broadcasters: Focusing on news subject and news valu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6(4), 265-309. [정수영·남상현 (2012).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265-309.]
- Kay, L., Reilly, R. C., Connolly, K., & Cohen, S. (2010). Help or harm?: Symbolic violence, secondary trauma and the impact of press coverage on a community. *Journalism Practice*, 4(4), 421-438.
- Kim, K.-H., & Jung, S. (2023). A study on the journalism value pursued by Korean journalists: Focusing on

- the analysis of the 50-year evaluation of the Korean Journalist Award.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7(4), 124-157. [김경희·정사강 (2023).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 가치 연구: 한국기자상 50년의 심사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7권 4호, 124-157.]
- Kim, K.-H., Shim, M.-S., & Park, E.-H. (2012). A study on consumer perception of standards for sexually suggestive features of television program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78, 109-135. [김경희·심미선·박은희 (201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심의기준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방송통신연구>, 78호, 109-135.]
- Kim, S. (2003). Visualizing news objectivity: A comparative case study of environmental television news in the US and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5), 363-384. [김수정 (2003). 뉴스 객관성의 영상화: 한국과 미국의 환경뉴스 사례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363-384.]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022). *Meeting minute of the 42nd Meeting of the Broadcast Review Bureau in 2022*. Retrieved 5/20/24 from <https://www.kocsc.or.kr/cop/bbs/selectBoardList.d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2022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 Lee, C.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sensationalism and reality representation of CCTV video on TV new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3(4), 5-43. [이창훈 (2012). CCTV영상의 보도 특성과 선정성, 현실 재현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권 4호, 5-43.]
- Lee, C.-H., & Sohn, S.-H. (1999). Importance of television news items and their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4(1), 412-440. [이창현·손승혜 (1999). 뉴스 아이템의 특성에 따른 TV 뉴스의 중요도 차이. <한국언론학보>, 44권 1호, 412-440.]
- Lee, G. O. (2020) The legal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Focusing on privacy infringement under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3, 145-176. [이근옥 (2020).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코로나 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호, 145-176.]
- Lee, J. H., Gil, W. Y., Kang, S., & Choi, Y. J. (2013). A comprehensive and structural approach to news values in multimedia environment: Extrac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news valu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7(1), 167-212. [이종혁·길우영·강성민·최운정 (2013).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구조적 접근: ‘뉴스 가치 구조모델’ 도출. <한국방송학보>, 27권 1호, 167-212.]

- McCosker, A. (2013). De-framing disaster: Affective encounters with raw and autonomous media. *Continuum*, 27(3), 382-396.
- McQuail, D. (2013). *Journalism and society*. London, UK: Sage.
- Montague, P. (1997). Government, the pres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28(2), 68-78.
- Pantti, M., & Andén-Papadopoulos, K. (2011). *Amateur images and global news*. Bristol, UK: Intellect.
- Pantti, M., & Wahl-Jorgensen, K. (2007). On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therapy news: Media responsibility and the limits of objectivity in disaster coverage. *Communication studies*, 1(1), 3-25.
- Pantti, M., Wahl-Jorgensen, K., & Cottle, S. (2012). *Disasters and the media*. New York, NY: Peter Lang.
- Ryu, S. K., & Kang, K. S. (2011).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 agencies' disaster-related reporting, using Delphi method for professional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76, 140-169. [유승관·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호, 140-169.]
- Salwen, M. B. (1995). News of Hurricane Andrew: The agenda of sources and the sources' agenda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4), 826-840.
- Sanfilippo, M. R., Shvartzshnaider, Y., Reyes, I., Nissenbaum, H., & Egelman, S. (2020). Disaster privacy/privacy disaster.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1(9), 1002-1014.
- Scanlon, J. (2006). Unwelcome irritant or useful ally? The mass media in emergencies. In Rodríguez, H., Quarantelli, E. L., Dynes, R. R. (Eds.), *Handbook of Disaster Research*. (pp. 413-429).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 Scanlon, J. (2007). Research about the mass media and disaster: Never (well hardly never) the twain shall meet. In D. A. McEntire (Ed.), *Disciplines, disasters, and emergency management* (pp. 75-94).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Shoemaker, P. J. (1996). Hardwired for news: Using biological and cultural evolution to explain the surveillance fun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46(3), 32-47.
- Shoemaker, P. J., & Cohen, A. A. (2012). *News around the world: Content, practitioners, and the public*. New York, NY: Routledge.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1991).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68(4), 781-795.
- Simon, T., Goldberg, A., & Adini, B. (2015). Socializing in emergencies - A review of the use of social media in emergency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5(5), 609-619.
- Steffens, M. (2012) *Covering disasters without becoming one*. In M. Steffens, L. Wilkins, F. Vultee, E. Thorson, G. Kyle, & K. Collins (Eds.), *Reporting disaster on deadline: A handbook for students and professionals* (pp. 1-9). New York, NY: Routledge.
- Thomson, T. J. (2021). Picturing destruction at home and abroad: A comparative visual analysis of icons and news values during disaster.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81(1), 197-216.
- Thorson, E. (2012). The quality of disaster news: Frames, disaster stages, and a public health focus. In M. Steffens, E. Thorson, G. Kyle, K. Collins, & F. Vultee (Eds.), *Reporting disaster on deadline* (pp. 69-80). New York, NY: Routledge.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NY: Free Press.
- Van Gorp, B. (2007). The constructionist approach to framing: Bringing culture back in.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60-78.
- Yan, Y., & Bissell, K. (2018). The sky is falling: Predictors of news coverage of natural disasters worldwide. *Communication Research*, 45(6), 862-886.
- Zelizer, B. (2010). *About to die: How news images move the public*.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일 2024년 04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4년 05월 29일